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해당 외국인의 보호 개시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인 외국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구체화

- 법률에서 위임한 최대 20개월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나. 보호외국인의 의견진술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명령서 발급·보호기간 연장·보호 일시 해제 취소 시 사전에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견진술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

다.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위원의 추천절차·임명권자,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장 및 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요건 등을 정함

라. 보호 심사청구·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 절차 변경

- 기존에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던 보호 심사청구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결정을 신설된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하게 됨에 따라, 변경된 절차를 반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중 “법 제51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 또는 영 제78조제1항·제10항”으로, “발급된 외국인이나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급된”을 “발급된”으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법 제55조제1항·제63조제5항 또는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심사청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서”를 “심사청구서”로, “의견을 붙여”를 “의견서를 첨부하여”로, “법무부장관에게”를 “법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이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에 대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0조의 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무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심사청구”로, “한 때에는 주문(主文)·이유”를 “하고 주문·이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로, “신청인”을 “심사청구인”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3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법무부장관”을 “외국인보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용의자가”를 “심사청구인이”로 한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7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8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법 제6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법 제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해제사유, 주거의 제한과”를 “해제사유와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으로, “조건”을 “조건(이하 이 조에서 “보호해제 조건”이라 한다)”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피보호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를 “피보호자가”

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8항”으로, “주거의 제한, 그 밖의”를 “보호해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 사유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보호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보호자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주 전까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가 보호기간 연장에 대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등을 제2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피보호자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전일까지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의 경우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조건의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서 조건을 붙이도록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청장·사무

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⑦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4항의 경우에 외국인보호위원회가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보호기간 연장의 사유, 보호기간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서를 발급하여 이를 해당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피보호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기간 연장서 부분을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⑪ 법 제63조의3에 따른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및 보호해제에 관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장제4절에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63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

호까지의 죄

2.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제166조제1항(일반건조물 등 방화), 제167조제1항(일반물건 방화),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5조(살인 예비, 음모),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4조(특수협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24조제2항(특수강요), 제343조(강도 예비, 음모), 제350조의2(특수 공갈) 및 제369조제1항(특수손괴) 위반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위반의 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로서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제79조제1항 중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을 “피보호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법 제65조제1항”을 “법 제65조제2항”으로, “청구하러”를 “신청하러”로, “청구서에 청구의”를 “신청서에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주문·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서에는 보호해제기간, 보증금의 액수·납부일시 및 장소,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 외에 보증금을 내면 보호를 일시해제하며,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④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주문·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3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5항의 경우에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 및 조건의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조건을 붙이도록 청장·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 및 제6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79조제8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경우에”를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5항의 경우에 외국인보호위원회가”로, “그 결정서에”를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로, “제한,”을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으로, “적어야”를 “서면으로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5항) 중 “결정한 경우에 용의자”를 “결정된 피보호자”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6항) 중 “법 제65조제2항”을 “법 제6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을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보호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청구”를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으로, “정한다”를 “정하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80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의2 의견진술

제5장 제5절의2에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① 청장·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의3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의견진술 기회 고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를 받은 외국인이 의견을 진술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서명·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고지를 받은 외국인이 의견을 진술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서 양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의견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의3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 해당 외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 통지를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공시송달

하여야 한다.

⑤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 의견을 진술하는 외국인(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청각 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에 한한다)에게 필요한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5항에 따라 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통역하거나 번역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2항의 서면 또는 제3항의 의견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제5절의3(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1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제80조의3(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이 조에서 “추천기관”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추천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원 추천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천기관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추천기관은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⑤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경우 해당 위원을 추천한 추천기관은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⑥ 법 제66조의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원
2. 국민권익위원회
3. 경찰청

⑦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0조의4(보궐위원의 임기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법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 임기가 끝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0조의5(위원의 기피·회피) ① 당사자는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피신청 사유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②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이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⑤ 기피신청에 대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⑥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심의·의결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제70조제1항 또는 제79조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66조의9제3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80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

면 상임위원 또는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의7(원격영상회의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66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보호위원회(법 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0조의8(구술심리 등) ① 법 제66조의12제4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구술심리 신청서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의12제2항에 따라 피보호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진술청취 또는 구술심리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구술심리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피보호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제3항 또는 법 제66조의12제5항에 따른 통지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법 제66조의12제7항에 따라 피보호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정대리인등을 말한다.

⑦ 법 제66조의12제7항에 따른 동석 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보호자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보호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피보호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리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장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심리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⑨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5항의 경우 의견을 진술하는 피보호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에 한한다)에게 필요한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⑩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0조의9(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협조)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로부터 피보호자와의 면접, 피보호자의 출석,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0조의10(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및 각하 결정)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의견서, 제78조제2항 본문 전단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제79조제3항에 따른 보호일시해제 신청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견서 등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 제3항, 제6

항 및 제80조의11에서 같다),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②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완 요구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할 수 있다.

③ 피보호자,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내에 보완자료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70조제1항 또는 제79조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받은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 또는 신청의 당사자인 피보호자가 보호로부터 해제되거나 출국 또는 사망한 경우

가.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이하 이 항에서 “심사청구”라 한다)

나. 제78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이하 이 항에서 “보호기간 연장 신청”이라 한다)

다. 제79조제3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이하 이 항에서 “보호 일시해제 신청”이라 한다)

2. 보호 일시해제 신청의 당사자인 피보호자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경우

3. 심사청구, 보호기간 연장 신청 또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이하 이 항 및 제80조의11에서 “심사청구등”이라 한다)을 한 자가 제80조의11에 따라 심사청구등을 취하한 경우

4. 이미 심사청구등을 하여 제70조제1항, 제78조제4항·제10항 또는 제79조제5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등을 한 경우. 다만, 이미 받은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심사청구등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제80조의11(심사청구 등의 취하) ① 심사청구등을 한 자는 외국인보호위

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심사청구등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등을 취하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그 뜻을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서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80조의12(서면의결) 법 제66조의1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장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 등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경우
4.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제80조의13(의결서의 작성) 외국인보호위원회가 법 제66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0조의14(분과위원회) ① 법 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사건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외국인보호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다른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합동으로 소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분과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와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하는 피보호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에 한

한다)에게 필요한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⑦ 분과위원의 기피·회피, 분과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5, 제80조의6제2항·제3항, 제80조의7제1항, 제80조의8제10항 및 제80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으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제80조의15(사무국장 및 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 ① 법 제66조의15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법 제66조의15제3항에 따른 외국인보호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3급부터 7급까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외국인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위원장이 정하는 외국인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 조사관은 외국인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

회에 조사관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의16(간사) ①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

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간사는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간사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0조의17(위원 명단 등의 비공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위원(분과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단

2.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0조의18(수당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

나 안전을 검토한 위원 및 분과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외국인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전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66조의12제2항 또는 이 영 제80조의14제6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관계인
2. 제80조의8제10항 또는 제80조의14제7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제출한 전문가
3. 제80조의2제5항, 제80조의8제9항 또는 제80조의14제6항에 따라 통역·번역한 통역인·번역인

② 제1항에 따른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80조의19(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6조의12제5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01조 중 “읍장·면장·동장”을 “읍장·면장·동장 또는 외국인보호위원회”로, “포함한다)은”을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4조(보호의 의뢰 등) ① 출입 국관리공무원은 <u>법 제51조제1 항에 따라 보호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이나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을</u> 외국인보호실, 외국인 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 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 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려면 소속 청장·사무소장·출장소 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 의뢰의 사유 및 근거를 적은 보 호의뢰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호 의뢰를 받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64조(보호의 의뢰 등) ① ----- ----- <u>법 제51조제1항 또는 영 제78조제1항·제10항-</u> ----- <u>발급된</u> ----- ----- ----- ----- -----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 <u>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 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 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 료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69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① <u>법 제55조제1항·제63조제5항 또는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보 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심사청구서</u> ----- ----- -----.
②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② -----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후단 신설>

제70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단서 신설>

심사청구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 법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에 ---. 이 경우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이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에 대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0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심사청구-- -- 하고 주문·이유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 심사청구인-----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3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②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보호해제 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생략)

②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보호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 -----

-- 외국인보호위원회-----

----- . ----- 심사청구인이 -----

-----.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 사유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보호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보호자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주 전까지 외국

<신 설>

<신 설>

<신 설>

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가 보호기간
연장에 대하여 구술 또는 서면
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의
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부득이한 사유
로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등을 제2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신청기
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
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
청서를 받으면 피보호자의 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전일까지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
는 보호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
의 경우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
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의2제4항에 따
른 조건의 범위를 정하여 그 범
위에서 조건을 붙이도록 청장·

<신 설>

<신 설>

③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⑦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4항의 경우에 외국인보호위원회가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보호기간 연장의 사유, 보호기간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서를 발급하여 이를 해당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피보호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기간 연장서 부분을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⑧ -----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할 때에는 해제사유, 주거의 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적은 보호해제 통보서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 설>

④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의 제한, 그 밖의 조건 이행 여부 등 동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신 설>

----- 법 제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해제사유와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
조건(이하 이 조에서 “보호해제 조건”이라 한다)--- 피보호자-----
 -----.

----- 피보호자가 -----

 -----.

⑨ 제8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⑩ -----
 ----- 제8항-----

보호해제 -----

 ---.

⑪ 법 제63조의3에 따른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및 보호해제에 관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78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63조제2항 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죄

2.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제166조제1항(일반건조물 등 방화), 제167조제1항(일반물건 방화),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5조(살인 예비, 음모),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4조(특수협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24조제2항(특수강요), 제343조(강도 예비, 음모),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69조제1항(특수손괴) 위반

제79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청장
· 사무소장 · 출장소장 또는 보
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
라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
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
(이하 “피보호자”라 한다), 피보
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이
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
게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등 보호의 일시해제 심사
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
다.

<신 설>

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 죄) 위반의 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로
서 「형법」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제79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

----- 피보호자 -----

②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호 일시해제 청구서에 청구의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주문·이유 및 적용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서에는 보호해제기간, 보증금의 액수·납부일시 및 장소,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 외에 보증금을 내면 보호를 일시해제하며,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65조제2항-----
----- 신청하려-----
----- 신청서에 신청

--.

④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신 설>

<신 설>

또는 보호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주문·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3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5항의 경우에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보증금 및 조건의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서 보

<신 설>

③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주문·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보호를 일시 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보호해제기간, 보증금

증금을 예치시키고 조건을 붙이도록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 및 제6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삭 제>

⑧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5항의 경우에 외국인보호위원회가 --- 피

의 액수·납부일시 및 장소, 주거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 외에 보증금을 내면 보호를 일시해제하며,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⑤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기간을 분명히 밝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국고 귀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9조의2(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① 청장·사무소장·출장소

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 -----

----- 서면으로 알려야 ----
-----.

⑨ -----

----- 결정된 피보호자-----

⑩ 법 제65조제4항-----

⑪ 제10항-----

제79조의2(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① 청장·사무소장·출장소

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장·보호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 신
청-----
-----.

1. ~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5조제1항-----
----- 정
하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절의2 의견진술

제80조의2(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의3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의견진술 기회 고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를 받은 외국인이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서명·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고지를 받은 외국인이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서 양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의견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의3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 해당 외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 통지를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⑤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 의견을 진술하는 외국인(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에 한한다)에게 필요한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5항에 따라 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통역하거나 번역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2항의 서면 또는 제3항의 의견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제80조의3(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이 조에서 “추천기

<신 설>

<신 설>

관”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추천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원 추천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천기관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추천기관은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⑤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경우 해당 위원을 추천한 추천기관은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⑥ 법 제66조의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원

2. 국민권익위원회

3. 경찰청

⑦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신 설>

<신 설>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0조의4(보궐위원의 임기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법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 임기가 끝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0조의5(위원의 기피·회피) ①

당사자는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피신청 사유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

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
는 보호소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②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
보내야 한다.

③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외국인보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④ 기피신청이 제1항을 위반하
였을 때에는 외국인보호위원
회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
다.

⑤ 기피신청에 대한 외국인보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하지 못한다.

⑥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에 대
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안

<신 설>

건에 대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심의·의결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제70조제1항 또는 제79조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66조의9제3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80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상임위원 또는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신 설>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의7(원격영상회의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66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임 위원이 아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보호위원회(법 제

<신 설>

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0조의8(구술심리 등) ① 법 제66조의12제4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구술심리 신청서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의12제2항에 따라 피보호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진술청취 또는 구술심리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

자가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구술 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구술심리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피보호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제3항 또는 법 제66조의12제5항에 따른 통지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법 제66조의12제7항에 따라 피보호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정대리인등을 말한다.

⑦ 법 제66조의12제7항에 따른 동석 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자와 피보호자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석하고자 하는자와 피보호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피보호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리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장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심리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⑨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5항의 경우 의견을 진술하는 피보호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에 한한다)에게 필요한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⑩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0조의9(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협조)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로부터 피보호자와의 면접, 피보호자의 출석,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신 설>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0조의10(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및 각하 결정)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의견서, 제78조제2항 본문 전단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제79조제3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견서 등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80조의11에서 같다),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②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 본문

에 따른 보완 요구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할 수 있다.

③ 피보호자,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내에 보완자료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70조제1항 또는 제79조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

한 경우로서 그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받은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 또는 신청의 당사자인 피보호자가 보호로부터 해제되거나 출국 또는 사망한 경우

가.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이하 이 항에서 “심사청구”라 한다)

나. 제78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이하 이 항에서 “보호기간 연장 신청”이라 한다)

다. 제79조제3항에 따른 보호

<신 설>

의 일시해제 신청(이하 이
항에서 “보호 일시해제 신
청”이라 한다)

2. 보호 일시해제 신청의 당사
자인 피보호자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경우

3. 심사청구, 보호기간 연장 신
청 또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
(이하 이 항 및 제80조의11에
서 “심사청구등”이라 한다)을
한 자가 제80조의11에 따라
심사청구등을 취하한 경우

4. 이미 심사청구등을 하여 제7
0조제1항, 제78조제4항·제10
항 또는 제79조제5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등을 한 경우.
다만, 이미 받은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
국인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심사청구등이 적법
하지 않은 경우

제80조의11(심사청구 등의 취하)

① 심사청구등을 한 자는 외국

<신 설>

인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의 심사청구등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등을
취하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그
뜻을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
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서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80조의12(서면의결) 법 제66조
의1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위원장이 안건을 검토한 결
과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

<신 설>

<신 설>

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의 의사정족수
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 등
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경우

4.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을 의결하는 경
우

제80조의13(의결서의 작성) 외국
인보호위원회가 법 제66조의1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결
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0조의14(분과위원회) ① 법 제
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이
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외국인보호위원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다른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합동으로 소집

<신 설>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분과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와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하는 피보호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에 한한다)에게 필요한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⑦ 분과위원의 기피·회피, 분과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5, 제80조의6제2항·제3항, 제80조의7제1항, 제80조의8제10항 및 제80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으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제80조의15(사무국장 및 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 ① 법 제6

6조의15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따
라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법 제66조의15제3항에 따른
외국인보호 조사관(이하 “조사
관”이라 한다)은 출입국관리 업
무에 종사하는 3급부터 7급까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
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다.

1. 외국인보호 관련 업무에 종
사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위원장이 정하는 외국인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 조사관은 외국인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 또는 분과

<신 설>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또는 분
과위원회에 조사관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의16(간사) ① 외국인보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
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
사 1명을 둔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간사는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3
급 또는 4급의 일반직 공무원으
로서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출
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3급
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 공무원
으로서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
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
이 지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간사는 외국인
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신 설>

제80조의17(위원 명단 등의 비공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분과위원회
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 참여했거나 참여
할 위원(분과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단
2.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위원
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외국인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제80조의18(수당 등) ① 외국인보
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
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및 분과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
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신 설> 제96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략)	<u>외국인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u>법 제66조의12제2항 또는 이영 제80조의14제6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관계인</u> 2. <u>제80조의8제10항 또는 제80조의14제7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제출한 전문가</u> 3. <u>제80조의2제5항, 제80조의8제9항 또는 제80조의14제6항에 따라 통역·번역한 통역인·번역인</u> ② <u>제1항에 따른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u> <u>제80조의19(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u> 제96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제10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보호소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출입국심사와 상륙·체류 관련 허가, 체류관리 및 각종 신고, 외국인 등록·조사·보호, 강제퇴거, 선박등의 검색,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보고, 난민 인정, 사실증명 발급, 남북왕래에 관한 사무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6조의12제5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0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읍장·면장·동장 또는 외국인
보호위원회-----
----- 포함한
다)는 -----

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	-----
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	-----
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	-----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	-----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